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 06.

환경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
(‘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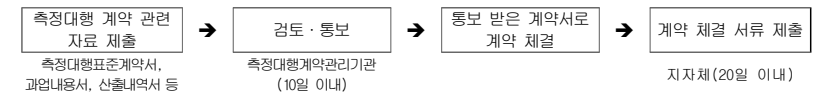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 관련 계약 사실 통보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대행표준
계약서*를 활용(안 제15조의2)

* 별지 제19호의3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나. 측정대행계약관리 제출 자료 및 제출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 자료 제출 절차 규정



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및 지정서
(별지 제19호의5서식 신설)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변경 신청해야 하는 중요사항* 규정

* 대표자 또는 상호,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라. 인용 법령 현행화 등(안 제17조의5,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규정 강화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10)

바.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에 따라 정도검사 세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도검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여(안 별지 제9호서식)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건 규정 현행화(안 별지 제2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측정대행 계약서”를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산출내역서
3. 계약에 수반되는 기타 서류

②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측정대행표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에 적어 측정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소재지
3.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③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제17조의5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제25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자의”를 “사람의”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측정대행 계약서”를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의 22), 23), 24), 25), 27)과 제2호 나목의 19), 20), 22), 23), 24)”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의 19), 20), 22), 23), 24)와 제2호나목의 29), 30), 32), 33), 34)”로 하며, 같은 호 중 “황함유량”을 “황합유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경고	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가)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기술능력 중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라)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우(소음·진동 분야는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실험실이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바) 전기·하수도 및 실험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사)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인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측정업무용 차량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자) 등록한 차량의 구비요건이 미비한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가) 측정대행 계약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또는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시약소모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다) 측정기록부를 의뢰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5)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등록취소			
6)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비 고

1. 2)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2)의 라) 및 사)에서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란 다음 각 목의 장비와 기기를 말한다.

- 가. 대기 분야: 피토포, 흡입관, 가스미터, 기압계, 고온온도계, 진공펌프, 마노미터, 산소측정기, 건조기, 분광광도계(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화학천평(化學天秤) 및 킬달분해장치
- 나. 수질 분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란기(孵卵器), 수욕조, 건조기, 분광광도계(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수소이온농도계, 비화수소발

생장지, 화학적산소요구량 환류장치, 전자포획검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화학천평 및 킬달 분해장치

다. 소음·진동 분야: 소음계, 소음도기록계 및 소음계외부교정기

라. 실내공기질 분야: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고성능 액체 크로

마토그래프, 열 탈착장치, 미니볼륨에어샘플러, 전자저울, 위상차현미경,

일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자동), 이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

외선법), 이산화질소측정기(화학발광법), 라돈 연속모니터측정기 및

총부유세균측정장비(Bio air sampler)

마. 악취 분야

1) 복합악취: 시료채취장치, 무취공기 제조장치 및 악취희석장치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시료채취장치, 악취농축장비, 열 탈착장비,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흡광광도계 중 측정항목별로 갖추어야 할 장비

별지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정도검사 증명서

품 명:

검 사 일 자:

유효 기 간: . . . 까지

형식승인번호:

제 조 사:

제 조 번 호:

검 사 기 관:

검 사 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거친 측정기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QR코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직인

< 비고 >

1. 정도검사 증명서는 환경측정기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2. 환경측정기기에 붙이는 면을 고려하여 정도검사 증명서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별지 제19호의2서식]

측정대행 계약사실 통보서

측정 대행 업자	상호(사업장 명칭)		측정대행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번호	계약상대자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항목별 분석수수료 단가	측정대행기간		비고
						개시일	종료(예정)일	
측정대 행 계약 실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대도시 시장

첨부서류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종질지 (80g/㎡)]

별지 [별지 제19호의3서식]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여부	여[☒] 부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명				< 검토완료 확인란 >

발주처				계약상대자					
1. 상호:				1. 상호:					
2. 주소:				2. 주소:					
3. 대표자:				3. 대표자:					
4. 사업자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				5. 전화번호:					
용역명:									
계약일자:		년	월	일	완수기간: 착수일로부터			000일	
착수일자:		년	월	일	완수일자:		년	월	일
측정현장:									
계약금액 : 일금				원 (₩ 00,000,000)					
계약보증금 : 일금				원 (₩ 00,000,000)					
선금 : 일금				원정 (₩ 00,000,000)				(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0 %									

"발주처"과 "계약상대자"은 합의에 따라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문서 : 1. 과업내용서(측정대행업무 대상 및 범위)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계약에 수반되는 기타 서류

$\overline{m}$
 $\overline{m}$
 $\overline{m}$

발주처	계약상대자
주소	주소
성명 (인)	성명 (인)

측정대행계약관리대상 처리절차 (시행규칙 15조의3제2항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표준계약서 검토결과 회신 (10일 이내)
신청인		처 리 기 관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 | 백상지 80g/m²

210mm×297mm[백상지 80g/m²]

충청대행계약관리기관

[] 지정 신청서

[] 변경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환경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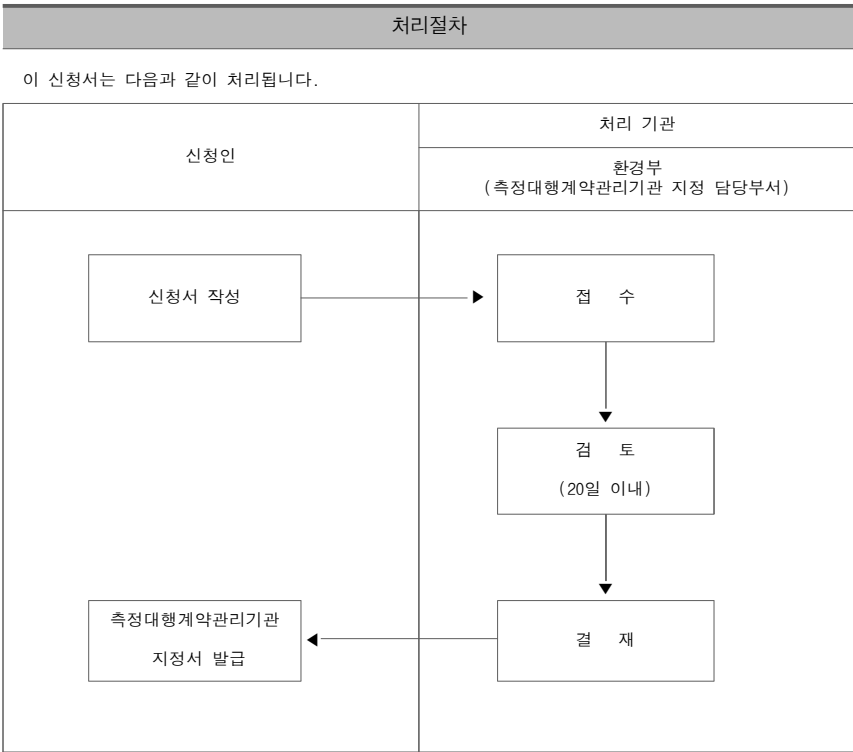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축정대행계약관리기관

[] 지정서

[] 변경지정서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접수일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뒤쪽)

축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변경)내용 현황			
지정(변경)연월일	지정(변경)내용	지정(변경)근거	확 인

별지 [별지 제21호서식 1-1호]

1-1. 대기분야 측정기록부

대기 측정기록부									
(이 서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의 19), 20), 22), 23), 24)와 제2호 나목의 29), 30), 32), 33), 34) 시설에서 TSP, NOx, SOx 항목을 측정할 경우에 작성한다.)									
① 의 뢰 인	상 호(기관명)				② 일 반 현 황	업 종			
	소 재 지(주소)					종 별			
	대표자(의뢰인)					주 생 산 품			
	환경기술인								
③ 의 뢰 내 용	측 정 용 도								
	대상의 명 칭 (측정지점)	굴뚝 명칭				굴뚝 종별			
	의뢰 항목								
④ 시 료 채 취	현 장 기 상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	%	mmHg			m/s		
	배 출 가 스	배출가스 유량		실측산소농도	표준산소농도		배출가스 속도		
		Sm ³ /시간		%	%		m/s		
	굴 뚝	굴뚝 높이		m	굴뚝안지름(측정공)		m		
	방 지 시 설	명 칭		대 상 물 질				방 지 효 율	
								%	
채 취 일 시				시료채취자		(서명)			
⑤ 시 설 가 동 상 황	배출시설 명칭	측정당시 시간당 사용(생산)량							방지시설 명칭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소각량	원료투입량	종류	단위		
⑥ 측 정 분 석 결 과	측정항목	허용 기준	측정분석값	측정시간 (환경질에만 해당함)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비 고	
				~					
				~					
				~					
	분석기간	~		분석책임자		(서명)			
⑦중 합 의 건									
위와 같이 측정분석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년 월 일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의뢰사항과 관련이 없는 난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됩니다. ※ 액체연료는 <u>황합유량</u>을 ()안에 %단위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 계약사실 통보서에 측정대행 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 ----- ----- ----- ----- ----- 별지 제19호의3 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 ----- ----- ----- ----- 제출해야 ----- --.
<신 설>	제15조의3(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 설>

1.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산출내역서

3. 계약에 수반되는 기타 서류

②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측정대행표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 계약서에 적어 측정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 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소재지
3.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1. ~ 13. (생 략)

14.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15. (생 략)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15. (현행과 같음)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② -----

----- 사람에게 -----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해야 -----

1.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자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자

③ (생 략)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
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매년 12
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
록)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
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
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
경인력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
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
리)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
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 사람

2. -----
--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
환경인재개발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
록) ① -----

----- 국립환
경인재개발원-----.

② -----

---- 등록해야 -----.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
리)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보고해야 -----.

② <u>국립환경인력개발원</u> 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 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u>자의</u> 인적 사항과 교육시 기 등을 항시 <u>관리하여야</u> 한다.	② <u>국립환경인재개발원</u> ----- ----- ----- ----- ---- <u>사람의</u> ----- ----- <u>관리해야</u> -----.
---	--